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25.

제안자 : 외교통일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특임공관장의 면직 후 퇴직일 규정을 즉시 삭제하기보다는 60일에서 30일로 축소하여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면서도 특임공관장의 귀국 및 인수인계를 가능토록 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3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특임공관장) ① ~ ③ (생 략)	제4조(특임공관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특임공관장)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u>특임공관장은</u> <u>재외공관의 장의</u> <u>직위에서 면한 후</u> <u>60일이 되는 날에</u> <u>퇴직한다.</u>	<u><삭 제></u>	④ <u>특임공관장은</u> <u>재외공관의 장의</u> <u>직위에서 면한 후</u> <u>30일이 되는 날에</u> <u>퇴직한다.</u>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877
----------	------

발의연월일 : 2024. 11. 26.

발 의 자 : 한정애 · 이용우 · 박주민
조인철 · 김영배 · 이재강
권칠승 · 박희승 · 조계원
송옥주 · 이인영 · 김재원
서영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 중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각계전문가를 외교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특임공관장제도는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이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이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가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옴.

문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특임공관장은 공관장을 면직하더라도 60일 후에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2달 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게돼 특임공관장은 퇴직할 때까지 특혜를 부여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특임공관장에 대한 특혜성 급여 지급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삭제).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한 후 바로 퇴직하는 것에서 현행 60일의 절반인 3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는 것으로 수정함.

법률 제 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특임공관장) ① ~ ③ (생략)	제4조(특임공관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u>60일</u> 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④ ----- ----- <u>30일</u> ----- -----.